

瑞山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
檢 討 報 告

1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2. 提出日字 : 1998. 3. 31

3. 提案理由

- 현행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,
- 현행 조례를 개정 승합, 화물자동차를 추가 차종으로 확대하여 이중 최초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(안 제2조 제2항, 안 제4조 제1항).
 -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 -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

-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- 이륜자동차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중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 인정 조항 변경 및 신설(안 제2조 제2항, 안 제4조 제2항 제4호).
 - 매매 알선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소에 제시된 자동차
 - 천재지변 교통사고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
 -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
 -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

5. 檢討意見

- 본개정 조례(안)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감면조례로써
- 내무부장관이 세제13400-37('98.2.12)호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(안)을 일괄 허가하고, 충남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조례개정 선행 절차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,
- 시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